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전기 차량 생산 관련 정의와 정책

-----  
2017년 5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5/2560 호와 2019년 5월 2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2/2562 호의 활동범주 4.16, 4.17, 4.18, 4.19에 해당하는 전기차량 생산에 관련한 투자촉진 안내 사항의 상세함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시함

**1. 정의**

“전기차량”이란 전기를 혼합한 차를 의미하며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배터리 전기차(BEV), 배터리 전기버스(Battery Electric Bus)가 해당됨

“차대”란 부품이 조립되지않은 차대의 자체를 의미하고 차량의 기본적인 구조인 뼈대 자체로서 조립해야할 부품, 예를들면 범퍼, 조명등이 조립되지않은 것을 의미

**2. 검사 정책**

투자촉진 판매되는 전기차량은 투자촉진받은 기계로부터 생산되어야하고 투자촉진위원회의 방법으로 동의를 얻은 법이어야 하며 그 전에 생산되었을 경우 2가지로 나뉨

2.1 New Model/Major Change 의 경우란 차대 자체의 변화가 있거나 차를 조립하고 생산, 중요한 부품을 하나이상을 사용한 경우로, 예를들면 배터리 Traction Motor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또는 종합조종시스템(DCU)이 해당이되며 3년 이내 이부분이 사용이된 경우인데 날짜 계산법은 촉진 지원 발급서가 발급된 이후인 경우와 2017년 5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5/2560 호 전기차량, 부품, 장비 투자촉진정책 따른 법인세 면제 권리와 혜택을 받는경우에 해당

2.2 Minor Change 의 경우란 2.1 항을 따른 변화에 해당하지않는 생산이나 중요한 부품을 하나이상을 사용한 경우로, 예를들면 배터리 Traction Motor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또는 종합조종시스템(DCU)과 차량부품이 사용된 경우와 2017년 5월 3일에 고시된 투자위원회 안내사항 5/2560 호 전기차량, 부품, 장비 투자촉진 정책에 따라 법인세 면제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량에 대해 지사는 ECO Sticker 기준에 맞추어 차량 시스템 정보를 표시해야하며 산업부는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기위한 조사를 할것임을 통지함

위와같은 안내를 공지함

투자촉진위원회 지사

2019년 5월 22일